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법의 의의와 목적

(1) 법의 의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¹⁾

(2) 법의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법의 입법 배경 및 발전과정

(1) 법의 입법배경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와 엄격한 형사처벌을 표현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윤락행위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이러한 윤락행위와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를 금지

1) 위(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pp.275

하며, 다시 제26조 제3항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범과 성매매가 제도적으로 묵인 내지 조장되는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상존하고 있었다.

2000년 군산 집장촌 화재에서 성매매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 침해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 단체의 입장이 수용되어 2002년 9월 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이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²⁾

(2) 법의 발전과정(연혁)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961년 11월 성매매(윤락) 행위를 사회악의 하나로 보고 그 일소를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었다. 동법은 윤락행위 등을 행하는 행위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형태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윤락행위자에 대한 선도보호를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수용처분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에 대하여는 요보호 자를요보호 자를 윤락여성에 한하여 윤락행위자의 처벌상의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윤락행위자의 처벌을 미약하여 실제로 윤락행위의 방지라는 효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절차상의문제로서 윤락행위자를 직업보도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고, 1995년 11월에 동법은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1995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자를 선도하기 위해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과 맞지 아니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윤락행위 등의 방지와 선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은 윤락행위 등을 행하는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윤락행위 등을 행하는 자에

2) (2005),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사회과학논집, pp.138~139

대한 선도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95년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전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개선하였지만, 개정 전 법률과 마찬가지로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성격과 사회복지 법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 게다가 개정 전에 비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도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그 지원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회복지 법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락이라는 용어의 변경 등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 규정을 사회복지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 제정)과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3.22 제정, 2004.9.22 시행)로 나누어 제정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서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사회복지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³⁾

3. 법의 내용

(1) 기본개념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함-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행위-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3)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pp.276~277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위-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② 앞에서 말한 ①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③ 앞의 ①과 ②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①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④ ①내지 ③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①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자, ②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 되어 성매매를 한 자, ③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한다.⁴⁾

(2) 대상자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2005), 사회복지법제론 유흥출판사, pp.384~385

- 1)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자
- 2)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 되어 성매매를 한 자
-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3) 주체와 책임

1) 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2) 초·중·고등학교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

(4) 권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다(제13조).

(5) 재정

1) 의료비의 지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2) 의료비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제2항).

2)비용의 보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 제2항).

(6) 지도·감독

1)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

야 한다(제16조 제2항).

4. 법의 실제(관련사례)

(1) 국외 사례

1) 각 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각국의 성매매 정책의 특성을 성매매 행위 자체의 처벌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분류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

분류	주요특징	세부사항	해당국가	기타
금지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①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 국회법안상정
		② 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③ 구매 및 판매행위 금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비범죄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거리성매매 구입행위 금지 *노르웨이: 성구매 행위 처벌법 제정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①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②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 지역에만 허용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등	*캐나다: 거리 성매매 행위(판매·구입·홍정행위처벌)

2) 성매매 산업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국외 사례

전체 26페이지 중 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전체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사회복지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문제점 및 해결방향

저작시기 : 2006-11

등록시기 : 2017-10-25

자료형태 : hwp, pdf

분 류 : 사회과학

출 처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20001359/>

--- 주의 사항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